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정책지원방안

이상용 대전발전연구원 대전인적자원개발센터 연구위원

1. 서론

최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구촌을 초월한 문화 및 인력의 교류현상이 나타나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최근 한국인 남여와 결혼하여 국내로 들어오는 결혼이민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이들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되어 진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자녀가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인식하여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결혼이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생활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적응을 통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장애요인들이 존재한다.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결혼이민자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3월 31일 기준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수는 2,792명으로 남성

*1 2009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제결혼이민자는 전국적으로 124,998명으로 2008년 113,656명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중 여성이 109,904명으로 87.9%이다.

이 260명, 여성이 2,53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대전도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리와 정책지원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정책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에 대한 적실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지원이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것도 관리체계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전시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한국 생활에 올바르게 적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법·정책적 지원

2.1 결혼이민자에 대한 법적 지원기반

최근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많은 사회적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기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제8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모국이 우리나라와 사회보장에 관해 어떠한 협정(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그 권리가 한정되며,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개별법률들이 외국인 적용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에 따라 권리의 발생여부가 결정된다. 동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중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 외국인 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있으며, 복지관련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외국인 적용규정을 두고 있다(법제처,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37호)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동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조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6월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조례 또는 국제결혼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4월 13일 대전광역시 조례 제3725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전시장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2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건복지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에 전국적 단위의 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제1차 지원대책(2005년 8월)에서는 불안정한 체류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 외에도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초생활 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제2차 지원대책(2005년 11월)은 생활안정대책으로서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적응지원체계 구축, 자녀양육지원 등이 핵심내용이었다. 제3차 지원대책(2006년 4월)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대책」은 1, 2차 지원대책에서 다른 체류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중 미흡했던 부분과 정보제공·취업·보건의료서비스 지원내용 등을 보강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추진부서로 지정하고 중앙정부 12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7대 주요 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06년 5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면서, 6대 지원과제를 마련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결혼이민자 및 2세와 외국인 여성 보호 및 정착지원’으로, 여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 및 2세에 대한 정책적 지원대책이 제시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8월 ‘지자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8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어 그전까지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다문화가족지원책을 통합적인 시스템 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월에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를 입국전 결혼준비기, 가족관계 형성기, 정착 및 자녀양육기, 역량강화기 등으로 구분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다.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 6월 19일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영주권 전치주의」 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 검토 및 국적취득 간소화 추진,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및 배우자 가족교육 강화,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적합직종 개발 더욱 확대, 직업상담·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2.3 대전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시책

대전시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2006년 9월 「건강가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10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2007년에는 「결혼이민자가족 통합지원대책」시행계획을 수립, 7개 영역, 29개 추진과제를 선정·시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7개 영역, 30개 추진과제를 선정·시행하였다²⁾. 특히 2008년에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깨는 한편 결혼이민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 대축제”를 개최하였다.

*2 대전시는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무료건강검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정보화교육, 이혼에 대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 체류연장 및 귀화절차 안내,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확대 등의 과제에 대해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여러 관련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그 여건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정책수요를 예측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관련기관별 역할정립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시행초기인 만큼 사회통합 및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초기단계적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녀 출산 후 가족형성 및 자녀성장에 따른 안정적 가정생활 마련과 같은 중장기적 과제선정 및 추진 역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4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은 범부처 차원에서 부처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관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³.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자체 직접사업 수행 및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시에 따라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이 있어 아직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정책 및 서비스 내용의 문제이다.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본인에 집중되어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며, 결혼이민자들의 국내생활에 있어서의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일부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지역별, 출신국별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욕구반영이 부족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중적, 시혜성 지원에 집중되다 보니, 중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미래전략 대비 또는 적극적 인재육성 차원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8.11).

다음으로는 사업추진체계의 문제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을 위한 사업들이 중앙부처 차원 및 지자체 단위에서는 중복 시행되고 단편적으로 집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⁵.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과에서 담당하도록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부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간 연계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체도 전담조직의 미설치,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도 한계성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고 격차가

*3 정부부처별 소관업무를 살펴보면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의 총괄, 보건복지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문화부는 다문화성제고 한국어 교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4 '07년 여성가족부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88.6%)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예를 들어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전통혼례식, 말하기 대회, 장가사랑 등 행사성 프로그램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해 지역별, 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민간단체·기업 지원 등 지역의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지역간 서비스의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아직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점이다. '07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은 결혼이민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제도적 지원(29.5%)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해소 정책'(24.9%)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문화 존중 국민인식전환'(46.0%)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26.0%)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결혼이주여성의 실태분석

3.1 일반적 사항

본 실태조사는 대전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이하 결혼이주여성이라 함)의 인구학적 현황 및 한국생활 만족도, 자녀양육문제, 취업육구, 복지육구 등 생활실태 및 복지육구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6.

*6 이를 위해 대전시내 거주 2008년 2월 28일 기준으로 총 2,248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여 79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한 질문과 취업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질문, 사회복지 수요 및 육구에 관한 질문, 응답자의 개인 신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의 출신국가는 '중국'이 3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33.2%, '필리핀' 8.9%, '일본' 6.6%, '우즈베키스탄' 3.8%, '캄보디아' 3.2%, '몽골' 1.6%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국(39.1%)과 베트남(33.2%)이 전체의 72.3%에 달해 대전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이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취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4.7%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75.3%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출신국가별 분포
(단위: 명, %)

출신국가	인원	구성비	출신국가	인원	구성비
중 국	309	39.1	우즈베키스탄	30	3.8
베트남	262	33.2	캄보디아	25	3.2
필리핀	70	8.9	몽 골	13	1.6
일 본	52	6.6	기 타	29	3.7
			합 계	790	100.0

결혼이주여성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전체의 54.4%, 30대가 27.5%, 30대가 13.9% 등으로 20대의 비율이 높았다. 한국 남편의 연령은 40대가 50.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5.1%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과 남편과의 연령차이는 15살 미만이 전체의 30.0%로 가장 많았으며, 10살 미만이라는 응답이 20.5%, 20살 미만도 19.2%로 전반적으로 결혼적령기를 넘긴 것으로 판단되는 40대의 한국 남성과 20대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결혼이민자
가족 부부의 연령
(단위 : 명, %)

나이	국제결혼부부의 연령 비교				부부간 연령차이		
	처		남편		연령차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 ~ 30세	430	54.4	6	0.8	남편 나이가 적음	21	2.7
31 ~ 40세	217	27.5	277	35.1	5살차 미만	121	15.4
41 ~ 50세	110	13.9	397	50.3	10살차 미만	161	20.5
51 ~ 60세	31	3.9	93	11.8	15살차 미만	236	30.0
60세 이상	2	0.2	11	1.4	20살차 미만	151	19.2
무응답	-	-	3	0.4	20살차 이상	97	12.3
합계	0	100.0	790	100.0	계	787	100.0
평균연령	32.0세		43.4세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30.8%, '대학교 졸업' 14.7%, '초등학교 졸업' 14.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16.0%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여성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결혼이주여성과 혼인한 한국 남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 56.1%, '대학교 졸업' 이 20.9%, '중학교 졸업' 이 20.9%, '초등학교 졸업' 4.3% 순인 것으로 조사되어, 결혼이주여성의 학력 수준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3
결혼이민자 가족
부부의 학력
(단위 : 명, %)

학력	부인		남편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무학	8	1.0	1	0.1
초등학교	112	14.2	34	4.3
중학교	243	30.8	121	15.3
고등학교	300	38.0	443	56.1
대학교	116	14.7	165	20.9
대학원 이상	10	1.3	15	1.9
무응답	1	0.1	11	1.4
합계	790	100.0	790	100.0

결혼이주여성의 동거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9.1%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2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배우자 및 시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가 9.7%, 배우자 및 시부모, 기타 가족과 살고 있는 경우가 1.9% 등인 것으로 나타나,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가족의 경우 주로 두 부부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국내생활 실태조사

1) 국내 입국연도 및 사유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2.1%가 '1990년 이전'에 입국하였으며, '1991년~2000년'에 입국한 경우가 16.3%, '2001년~2008년 7월 현재'까지 입국한 경우가 81.2%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 여성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이 2000년 이후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응답자들의 18.2%가 2006년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5년 13.8%, 2007년 13.5%였다.

표4
입국시기
(단위: 명, %)

	인원	백분율
1990년 이전	16	2.0
2000년 이전	128	16.3
2001-2005년	331	42.1
2006년 이후	311	39.6
합계	786	100

이처럼 1990년 이전에는 2%정도에 불과하던 여성결혼이민자가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00년 이후에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신국별로는 2000년 이전에는 중국 국적의 여성들의 입국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과 필리핀 여성들의

입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입국사유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 대부분(87.5%)이 결혼 때문에 입국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중국 출신 여성 중 81.9%, 베트남 여성의 96.9%, 필리핀 여성의 94.3%, 일본 여성의 71.2%,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83.3%가 결혼목적으로 입국했으며, 캄보디아 여성들은 응답자 전원이 결혼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2) 가족과의 관계 실태조사

대전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의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52.4%가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파악되어, 남편과의 관계에 비해 남편의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생활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편과 가족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

하다면 한국 생활 자체의 불만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의 가족과의 관계가 불만족스러운 원인을 찾아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국내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1명' 인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1.1명이었다. 연령별로는 취학 전 연령인 '만6세 이하'가 55.8%, 초등학교 연령인 '만7~12세'가 17.8%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가족 자녀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므로 이들의 정체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그들과 함께 커갈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가족은 자녀의 양육상 '보육비용' (32.0%)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외에도 '아이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함' 22.3%, '언어차이' 20.8%, '보육정보의 부족' 17.3%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이 요구되며, 이 밖에도 자녀의 학습 조력을 위한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5
자녀양육상
애로사항
(단위: 명, %)

	인원	구성비
보육정보의 부족	89	17.3
보육비용	165	32.0
언어차이	107	20.8
양육방법에 대한 가족과의 갈등	30	5.8
아이의 학습에 도움을 못 줌	115	22.3
아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9	1.7
합계	515	100.0

3) 경제활동 실태조사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가족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5%이었으며, 평균 소득액은 179.2만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가구 월평균 소득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3.6%나 되었는데, 2008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가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72.7%),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임금액도 79.6만원으로 대전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에 대해서는 90.9%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많은 결혼이주

여성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일조하기 위해서'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국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서'가 22.1%, '자기발전을 위해서'가 12.1%, '자녀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서'가 10.7%, '노후대책을 위해서'가 7.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6
취업 희망 사유
(단위: 명, %)

	인원	구성비
생활비 일조	341	47.5
자녀교육비 충당	77	10.7
노후대책	54	7.5
자기발전	87	12.1
본국가족에게 송금	159	22.1
합계	718	100.0

결혼이주여성들의 22.7%가 할 수 있는 일로 '관광통역 및 번역'을 꼽았으며, 16.8%가 '식당종사원 및 판매직', 15.8%가 '생산직', 14.2%가 '아동 외국어 교육', 12.3%가 '가사도우미 및 베이비시터', 8.0%가 '본국요리사', 4.3%가 '이주여성상담사', 1.9%가 '자국민 산후도우미' 등을 꼽았다. 기타로는 미용관련직이나 가수, 댄스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직종 등을 할 수 있는 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결혼이주여성의 43.8%가 한국어와 본국어 2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통역 및 번역, 외국어 교육, 이주여성 상담 등을 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위하여 장기간 훈련을 해야 하거나 훈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직종보다는 식당종사원이나 판매직, 생산직,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등 저숙련 직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7
할 수 있는 일
(다중응답)
(단위: 명, %)

	인원	구성비
관광통역 번역	179	10.9
아동 외국어 교육	243	14.8
본국 요리사	95	5.8
이주여성 상담사	118	7.2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163	9.9
식당종사원, 판매직	256	15.6
생산직	391	23.8
자국민 산후도우미	169	10.3
기타	30	1.8
계	1,644	100.0

전체 결혼이주여성 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 및 고학력 여성들에 대해 이들을 마냥 미취업 상태로 두거나 자격증과 무관한 저숙련 직종에서 일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맞는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자격증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결혼이주여성들은 각종 교육을 받거나 상담 혹은 본국 출신과의 교류를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이주여성지원센터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이들 기관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이나 본국 출신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이주여성지원센터를, 취업정보를 얻거나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관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정도를 5점 척도로 점수화하여 살펴본 결과 취업을 위한 기술, 직업교육이 평균 3.8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소개가 3.81로 취업관련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⁷⁾.

다음으로는 한국어 교육 3.79, 한국문화 이해 교육 3.79로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 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또한 기초법률, 생활정보 교육등에 대한 욕구 3.67, 생계비 지원 3.57, 의료비 지원 3.46등으로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반면 집수리, 도배 등의 주택관련 서비스는 2.73, 베이비시터, 청소 등의 가정봉사서비스에 대한 욕구도는 2.65, 고민, 폭력상담 등의 방문상담 서비스는 2.66 등으로 이들에 대한 욕구는 낮은 편이었다.

*7 조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희망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조사에서 설문대상 결혼이주여성의 90.9%가 취업을 희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맞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알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표8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 조사
(단위 : %)

	평균		평균
생계비 지원	3.57	출산, 자녀양육 교육	3.37
의료비 지원	3.46	한국어 교육	3.79
가정봉사 서비스(베이비시터, 청소 등)	2.65	한국문화 이해 교육	3.79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2.73	기초법률, 생활정보 교육	3.67
방문상담 서비스(고민, 폭력 상담 등)	2.66	일자리 소개	3.81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교육	2.93	취업을 위한 기술, 직업 교육	3.86

5) 사회생활 실태조사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수준은 37% 정도의 응답자들이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도 28.6%로 나타났다. 보통

의 응답을 포함한다면 약 63%에 가까운 결혼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과거에 비해 한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하나,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접하고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4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지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활 적응 교육을 크게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요리교육, 취미교육, 취업교육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바, 한국어 교육은 전체 응답자의 56.3%가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국문화·요리교육은 35.7%, 취미교육은 25.7%, 취업교육은 16.1%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69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문화·요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66, 취미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평균 3.57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편이다. 반면 취업교육에 있어서는 만족도 평균이 3.28로 4개 부문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점은 취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요에 비해 교육에 대한 만족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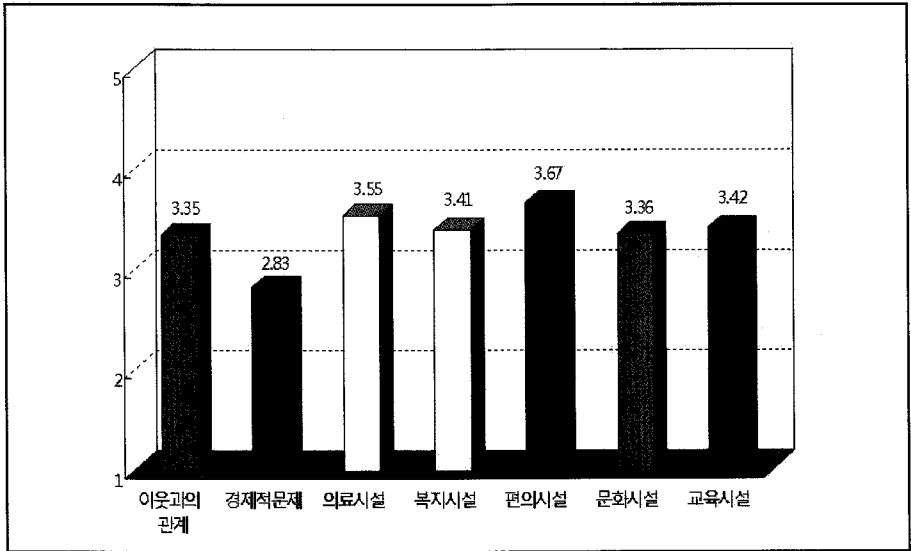
표9
한국생활 적응교육
경험 여부 및 만족도
(단위: 명, %)

	경험 없음	경험있음	만족도 평균
한국어교육	345(43.7)	445(56.3)	3.69
한국문화, 요리교육	508(64.3)	282(35.7)	3.66
취미교육	587(74.3)	203(25.7)	3.57
취업교육	663(83.9)	127(16.1)	3.28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마트나 은행 등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 만족도 평균이 3.67로 가장 높았으며, 약국이나 병원 등과 같은 '의료시설'에 관해서는 3.55, 어린이집이나 학교, 학원 등과 같은 '교육시설' 3.42, 복지관이나 지원센터 등과 같은 '복지시설' 3.41, 도서관이나 체육관 같은 '문화시설' 3.36, '이웃과의 관계'는 3.35 등의 만족도 평균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에 있어 '경제적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이들은 한국생활 전반에 대해 38.4%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은 14.4%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52.8%). 그러나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에 따라 만족도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원활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도 상당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림 1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



이와 함께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언어 나 문화의 차이' (46.8%)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 (17.6%)을 꼽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나 상담할 사람이 없다는 점(8.4%), 외국인에 대한 차별(6.6%)도 한국생활의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10
한국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단위 : 명, %)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어려움이 없다	100	12.7	외국인에 대한 차별	52	6.6
언어, 문화의 차이	370	46.8	생활환경 열악	15	1.9
남편, 가족과의 갈등	25	3.2	기 타	8	1.0
친구, 상담할 사람 없음	66	8.4	무응답	15	1.9
경제적 어려움	139	17.6	합 계	790	100.0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4. 정책적 제언

대전에서의 국제결혼은 2007년 현재 748건으로 2005년 1,004건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체 혼인건수의 7% 정도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2009년 3월 현재 대전에는 총 2,792명의 결혼이민자중 여성은 2,532명으로 전체의 90.7%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는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정책적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되어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책들이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는 실정이다. 단지 결혼이주여성들 개개인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다문화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시책이 요구된다.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체계 및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결혼이민자가족정책이 물량위주나 일회성 행사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습득과 한국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강화, 빈곤가족 지원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전시민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 시책 및 사회적 지원은 결혼이주여성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급자적인 측면이 강한 편이다. 이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여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요구조사를 선행하여 그 필요에 따른 정책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창현(2007), "지역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와 협의회의 설계",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4권 제1호.
- 강휘원(2007),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지역 거버넌스", 다문화가족연구.
- 김윤태·설동훈(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제29권 제3호 통권 107호.
- 김이선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황정미·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1):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헌민·김유미·박지현(2008),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2008 하계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3).
- 문순영(2007), "헌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2(1).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 반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2007), 「아시아 여성 이주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한국여성학 30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혜경(2005), "한국의 국가발전 정책과 이주정책의 상호보완 가능성 : 이주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법무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08), <http://www.elis.go.kr>.
-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